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차

01 논의 배경

02 관련 법령 및 현황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04 대안별 효과 분석

05 특별법 개정(안)

Part 1

논의 배경

01 논의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정부 간 재정관계 개념

-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는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관점하에서 각국 정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됨**
  - (기능배분) 누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 (세원배분) 누가 어떠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수직적 재정조정)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즉 수직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수평적 재정조정) 동일 정부 계층에 속한 지방정부 간 역량과 수요의 차이, 즉 수평적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시·군과 자치구는 지방세 구조와 정부 간 이전재원 지원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재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재정 시스템 하에서는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01 논의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시와 도라는 서로 다른 지방행정 체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우리나라 최초 사례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조직 개편이 아닌,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부 계층 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 개편임**
  - 기존 정부 간 재정관계는 광역시와 도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아래 시·군·구가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정부 간 재정관계가 형성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현행 재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된 권한과 책임으로 인해 광역-기초 간 재정 시스템 변화가 필요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부의 수평적 정부 간 재정관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능·역할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01 논의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정부 계층 구조 변화

- (통합 전) 광주광역시-자치구, 전라남도-시·군 간 이원적·대칭적 정부 간 재정관계를 형성함
- (통합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자치구 간 일원적·비대칭적 정부 간 재정관계를 형성함

통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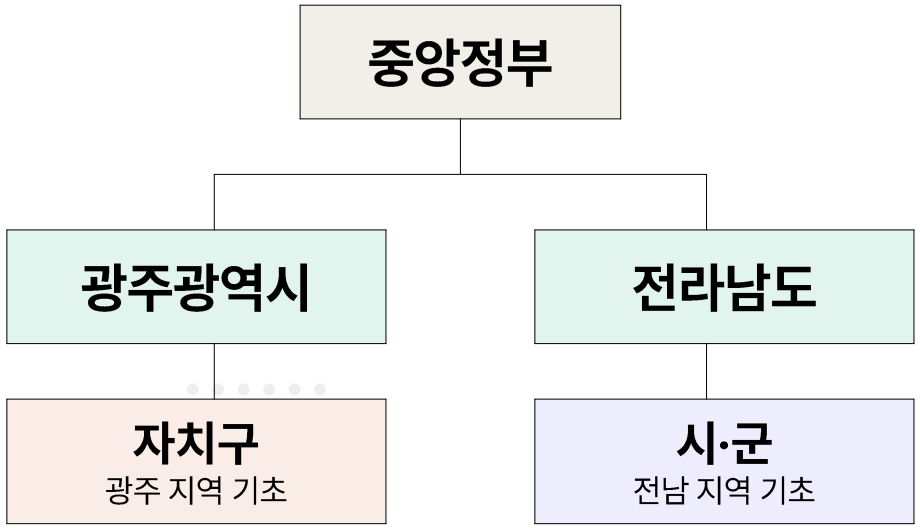

행정구역 통합
(2026.07)

통합 후

01 논의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 **(세원배분) 자치구세(2개)와 시·군세(5개) 간 비대칭적 세원 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재정조정) 지역 간 권한·재정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구분	수직적 관계(중앙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평적 관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부)
기능배분	특별법 및 보충성 원칙에 따른 사무 이양 가능 (교육·지역개발·산업·농림수산·복지 등 국가 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양)	광역-기초 간 사무 재배분 미확정 (권한·재정의 광역자치단체 집중 시 기초자치단체 기능 약화 우려)
세원배분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이양 규정 특별법 미반영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광역시세(9개)와 도세(6개) 간 이원적 체계 재정립 필요 (광역시-자치구 vs 도-시·군 세원 배분 비대칭 조정 필요)
재정조정	연간 5조 원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 미확정 (국고보조금 방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성 감소),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필요	세원 배분 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조정교부금 체계 개편 필요 (중장기적으로 조정교부금 체계 일원화),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 검토 필요

01 논의 배경 | 자치구-시·군 간 비대칭적 재정 구조

광역시와 도의 이원적 재정조정 구조

- **세원배분 및 재정조정 측면에서 광역시-자치구와 도-시·군은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지 않고 본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부 받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조례를 통해 규모가 결정되며, 지방세 세목도 2개만 보유하고 있음**
- **반면,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고, 법률 규정을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며, 지방세 세목도 5개를 보유하고 있음**

구분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시·군
보통교부세 산정·교부	자치구와 본청 합산 산정 → 본청 교부 (자치구 간접 교부)	시·군 개별 산정 → 시·군에 직접 교부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 조례로 비율 결정)	시·군 조정교부금 (도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47%)
세목 구성	광역시세(보통세 7개·목적세 2개), 구세(2개)	도세(보통세 4개·목적세 2개), 시·군세(5개)

01 논의 배경 | 자치구-시·군 간 비대칭적 재정 구조

지방세 구조

- 광역시-자치구와 도-시·군은 지방세 구조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자체수입 규모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
-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개 세목(주민세 일부)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시·군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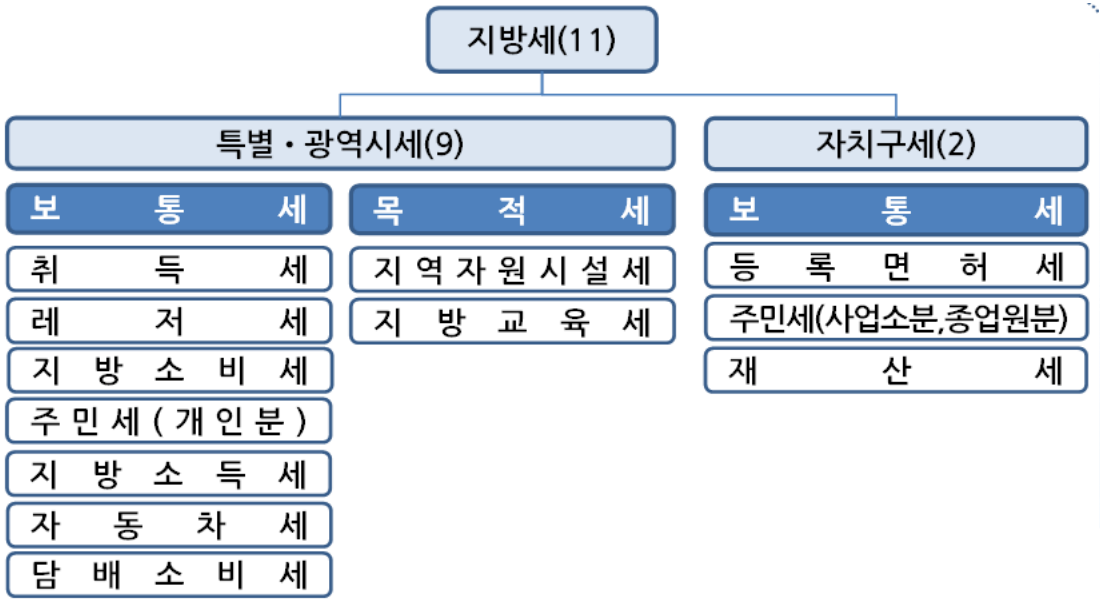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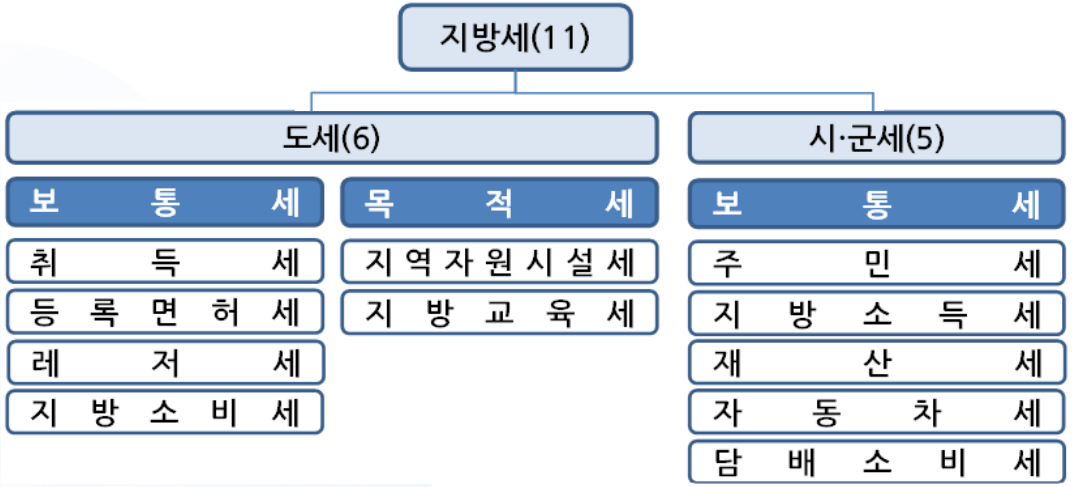

01 논의 배경 | 자치구-시·군 간 비대칭적 재정 구조

조정교부금 구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은 재원 체계, 산정 구조,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현행 광주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3.9%를 재원으로 산정함**

구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지방재정법」 제29조
교부 주체 → 대상	특별·광역시 → 자치구	도 → 시·군
① 재원 체계		
재원	특별·광역시 보통세 수입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일부 세목 제외)
교부 비율	특별·광역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 (광주광역시 23.9%)	도세의 27%(원칙) / 47%(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
비율 결정	각 특별·광역시 조례 (자율)	「지방재정법」 (법정)
② 산정 구조		
교부금 종류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약 10%)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약 10%)
산정 기초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조정률	인구·도세 징수실적·재정력
③ 산정 방식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배분 기준	산정방식 지역별 상이 (연동조정율 / 보장조정율 / 혼합형)	인구수 50% · 도세 징수실적 30% · 재정력 지수 20%
기준 결정	특별·광역시 조례 (자율적 설계)	「지방재정법」·시행령 (법정)
④ 형평화 책무		
책무 소재	총 규모·배분방식 (특별·광역시 결정 → 책무 집중)	법정 기준에 따라 형평화 수행

01 논의 배경 | 자치구-시·군 간 비대칭적 재정 구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체재원과 조정재원 1 기준의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정재원 2, 조정재원 3, 조정재원 4 기준의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는 보통교부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구분	자체재원	조정재원 1	조정재원 2	조정재원 3	조정재원 4
광주(A)	0.20975	0.15864	0.20975	0.15864	0.16767
전남(B)	0.39575	0.38092	0.20049	0.20274	0.19984
전남광주(C)	0.37360	0.37174	0.27674	0.23815	0.20326
차이(C-A)	0.16385	0.21310	0.06699	0.07951	0.03559
차이(C-B)	-0.02215	-0.00918	0.07625	0.03541	0.00342

주 1: 자체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 조정재원 1은 자체재원+조정교부금, 조정재원 2는 자체재원+보통교부세, 조정재원 3은 자체재원+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 조정재원 4는 자체재원+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을 더한 값임

주 2: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기준,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임

자료: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예산), 행정안전부(2026). 2026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01 논의 배경 | 행정구역 통합 사례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프랑스와 창원시 사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부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형평화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
  - 프랑스 레지옹 통합과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는 모두 통합 당시 제시되었던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통합 창원시는 통합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지적되었음
    - 프랑스는 재정 취약 레지옹에 대한 재정조정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시도하였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 지역인 광주와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분포한 전남이 결합된 형태로, 지역 내 재정 여건과 경제력 격차가 존재함**
- **그러나 현행 특별법 및 관련 제도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와 전라남도 시·군의 비대칭적 재정 시스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지방세와 이전재원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음**
-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측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01 논의 배경 | 행정구역 통합 사례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창원시 행정구별 인구 연평균 증가율: 통합 전후 비교

- 행정구역 통합 이후(2011~2019년) 구 마산의 인구는 연평균 -1.08%(핵심연령층 -2.90%)로 세 행정구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함
-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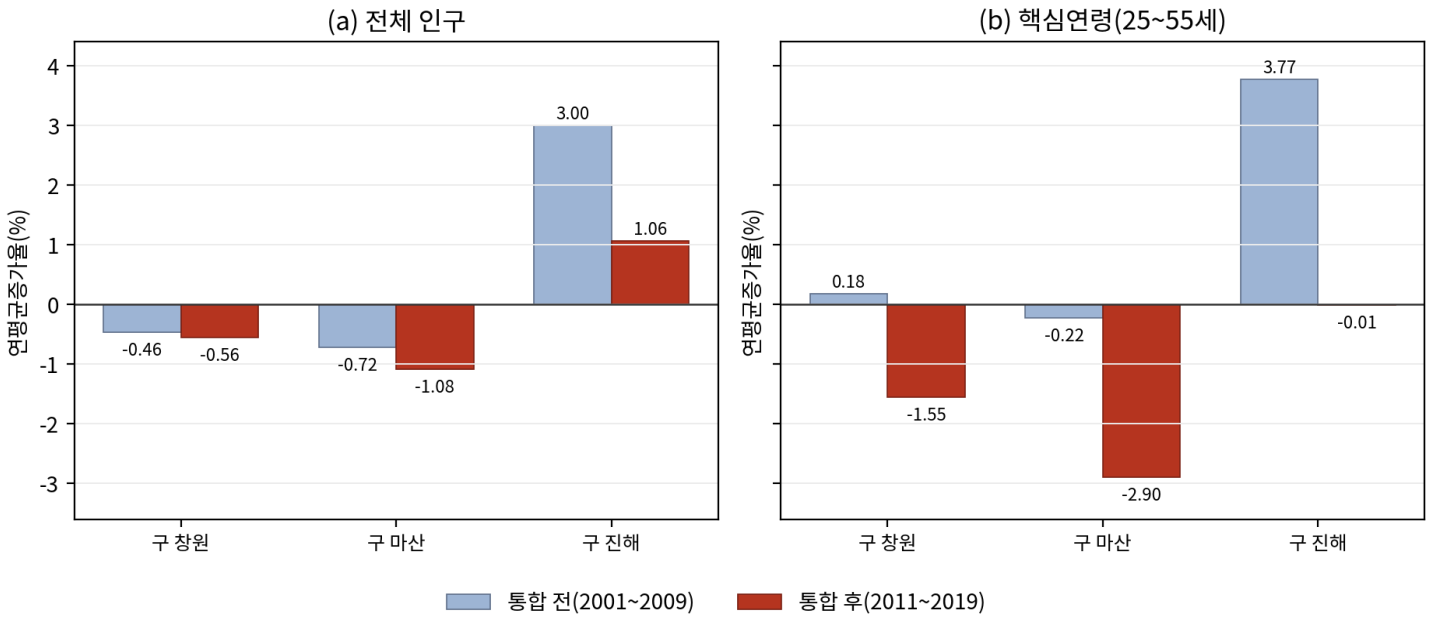

자료: 한재명 외(2020). 통합시 재정지원 평가 및 지원연장 타당성 검토

01 논의 배경 | 행정구역 통합 사례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프랑스 레지옹과 창원시 통합 사례의 시사점

- 행정구역 통합 사례의 공통 교훈은 권한·재정의 실질적 재배분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임
-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자체재원 확충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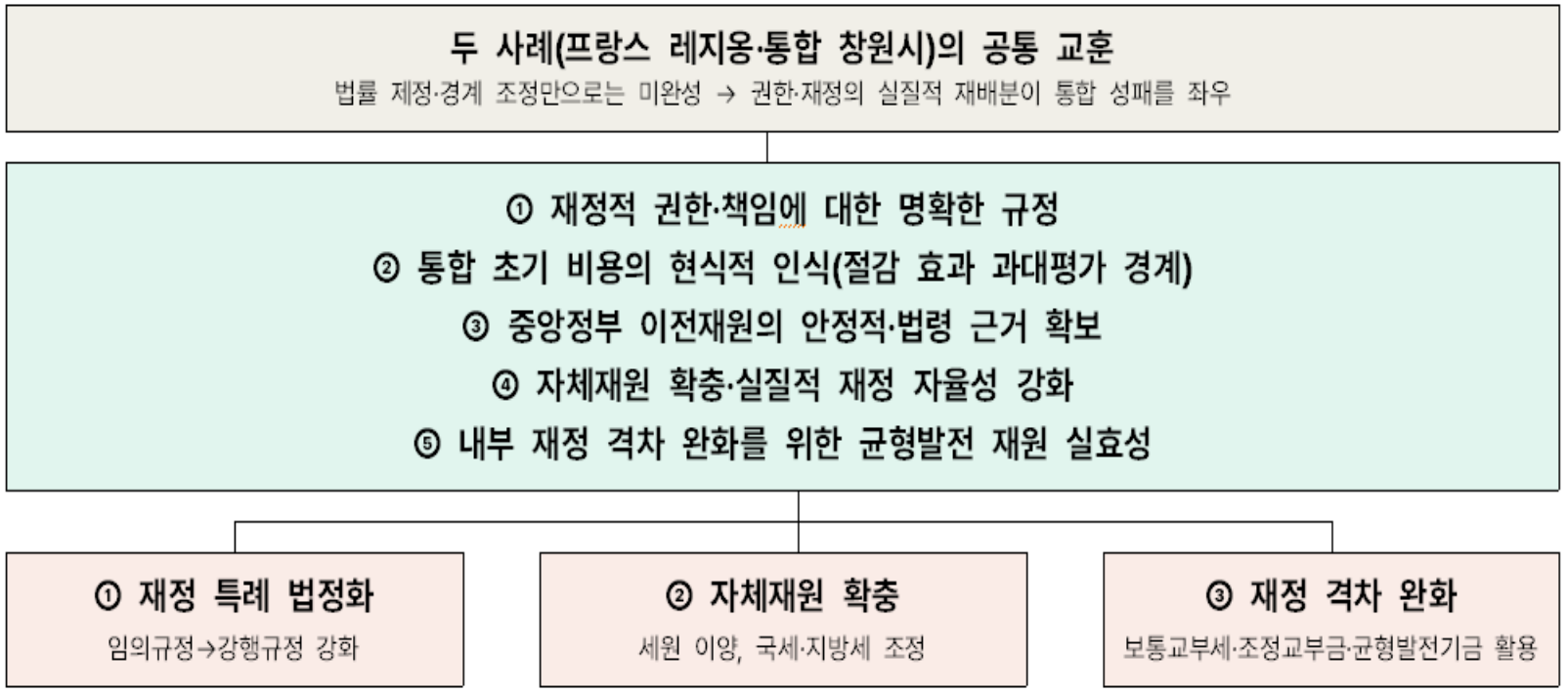

Part 2

관련 법령 및 현황

02 관련 법령 및 현황 | 관련 법령

통합특별시 재정 관련 주요 법령 체계

- 일반법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재정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18조
지방자치 및 자치재정권 보장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종류·기능 배분·통합 절차 / '통합특별시' 신설(2026년 개정)

▼

자체재원	이전재원(무조건부)	이전재원(조건부)
「국세지방세조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등

▼

권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 통합특별시 재정 특례·지원위원회·균형발전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군·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군·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군·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조정 /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
3. 대규모 재난 관리 /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사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군·구에 과도한 재정적·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제54조(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02 관련 법령 및 현황 | 관련 법령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시 · 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세입 규모(2024년 결산)

- 2024년 결산 기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시·군보다 약 3배 정도 낮은 수준임
- 조정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시 지역보다는 많지만, 군 지역보다는 작은 규모임
-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규모 격차는 특히 보통교부세 측면에서 크게 나타남

(단위: 조원, 원)

구분		인구수	지방세		자체수입		보통교부세 산정액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전체		3,197,241	6.6 (100.0)	2,051,723	9.0 (100.0)	2,733,134	8.7 (100.0)	2,735,562	0.9 (100.0)	280,998	2.5 (100.0)	785,269
광주	광역	1,408,422	2.1 (31.4)	1,461,172	2.6 (31.6)	1,814,141	1.1 (12.5)	776,841	0 (0.0)	0	0 (0.0)	0 (0.0)
	자치구	1,408,422	0.4 (6.5)	300,857	0.6 (14.2)	453,452	0 (0.0)	0	0.4 (49.0)	312,271	0.8 (31.7)	564,962
전라남도	광역	1,788,819	2.5 (38.7)	1,417,730	2.8 (24.4)	1,562,421	1.4 (15.7)	767,315	0 (0.0)	0	0 (0.0)	0 (0.0)
	시	1,025,381	0.9 (13.8)	882,698	1.5 (19.2)	1,486,190	1.8 (20.7)	1,765,979	0.2 (21.3)	186,990	0.6 (22.6)	552,825 (70.4)
	군	763,438	0.6 (9.7)	834,393	1.2 (8.3)	1,605,844	4.5 (51.1)	5,853,447	0.3 (29.7)	349,567	1.1 (45.7)	1,503,899 (191.5)

자료: 지방재정365, 재원별 회계별 세입(결산 총계 기준), 20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행정안전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재정 형평화 재원 규모

-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자치구, 시·군)과 보통교부세가 활용되고 있음
-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지 않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통해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설명됨
- 그러나 자치단체별 평균값을 통해서 볼 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군에 비해 매우 적은 재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단위: 백만 원)

자치구	조정 교부금	시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	군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	군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	군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
동구	60,450	목포시	299,920	담양군	218,590	장흥군	265,879	영광군	266,349
서구	64,200	여수시	435,572	곡성군	217,226	강진군	236,347	장성군	232,411
남구	77,841	순천시	580,422	구례군	178,540	해남군	451,104	완도군	287,254
북구	106,332	나주시	411,492	고흥군	394,593	영암군	278,904	진도군	232,148
광산구	87,760	광양시	312,578	보성군	279,602	무안군	308,071	신안군	356,430
-	-	-	-	화순군	302,781	함평군	222,304	-	-
평균	79,317	**평균**	407,997	**평균**	278,149				

세출 규모(2024년 결산)

- 자치구와 시·군의 총세출 규모는 약 1.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1인당 금액의 경우 약 2-5배 이상 차이가 존재함
-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자치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치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 운용 경직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치구와 시·군의 자체사업 규모가 약 4-6.5배 차이나는 것도 자치구의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함

(단위: 조원, 원)

구분		인구수	총세출		사회복지지출		자체사업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전체		3,197,241	41.0	12,823,556	13.6	4,253,667	9.1	2,836,821
광주	광역	1,408,422	7.6	5,396,110	3.1	2,201,045	2.0	1,420,029
	자치구	1,408,422	4.0	2,840,058	2.4	1,704,035	0.4	284,006
전라남도	광역	1,788,819	11.0	6,149,309	3.7	2,068,404	2.6	1,453,473
	시	1,025,381	6.6	6,436,632	2.1	2,048,019	1.5	1,433,613
	군	763,438	11.8	15,456,396	2.3	3,012,687	2.6	3,405,647

자료: 지방재정365, 재원별 회계별 세출(결산 총계 기준), 20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

공무원 규모 추이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자치구의 공무원 규모는 연평균 3.3%씩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이러한 추이는 자치구의 기능과 사무가 시·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단위: 명)

시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합계	본청	자치구	합계	본청	시	군
2015	7,241	3,262	3,979	20,332	4,016	6,027	10,289
2016	7,314	3,261	4,053	20,604	4,234	6,019	10,351
2017	7,611	3,400	4,211	20,930	4,414	6,085	10,431
2018	7,956	3,529	4,427	21,698	4,800	6,264	10,634
2019	8,409	3,700	4,709	22,685	5,263	6,485	10,937
2020	7,377	2,393	4,984	20,247	2,288	6,845	11,114
2021	7,688	2,512	5,176	20,706	2,403	6,931	11,372
2022	7,832	2,572	5,260	21,343	2,535	7,033	11,775
2023	7,954	2,543	5,411	21,549	2,376	7,188	11,985
2024	7,919	2,568	5,351	21,319	2,294	7,139	11,886
연평균 변화율	1.0	-2.6	3.3	0.5	-6.0	1.9	1.6

Part 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

법령에 따른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체계

-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시행령 [별표 1-4]는 자치단체 유형별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의 경우 시·군이 수행하는 기능 중 도시기본계획 수립,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승인 등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구분	주요 내용	대표 사무	법적 근거
광역자치단체 (시·도)	광역적·조정적 기능 수행	광역 계획 수립, 사회복지 기본계획, 광역 폐기물 처리, 지방도 관리, 광역 상·하수도 계획, 재해대책, 소방행정 등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시행령 [별표1]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주민 밀착형 집행기능 수행	복지서비스 제공, 건축허가, 생활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집행, 도로·공원 관리, 보건·방역, 지역경제 육성 등	
특별·광역시	자치구 미이양 사무로 광역적 통합 관리 필요 사무 수행	공무원 시험·교육,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승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상수도·하수도 운영,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공설 묘지·화장장 운영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가 도 사무 일부 직접 처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사업 승인, 박물관·미술관 등록, 환경규제(악취·소음·수질) 관리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가 광범위한 도 사무 직접 처리	대형 건축물 허가, 소방 사무(창원시 시범),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

특별법 규정에 따른 사무이양 유형

- 통합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 광역-기초 간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은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략적인 방향성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사무이양 유형	강행	임의	선언	계	이양 방향(항 기준)
권한 직접 이양	39	8	1	48	중앙 → 광역 35, 광역 내부 등 12, 광역 → 기초 1
권한 이양 절차	7	7	3	17	중앙 → 광역 9, 광역 내부 등 6, 광역 → 기초 2
권한 이양 계획·원칙	4	2	1	7	중앙 → 광역 6, 광역 → 기초 1
위임	4	9	0	13	중앙 → 광역 9, 광역 내부 등 4
공동·위탁	3	4	1	8	중앙 → 광역 1, 광역 내부 등 7
요청·협의	5	6	0	11	중앙 → 광역 5, 광역 내부 등 5, 광역 → 기초 1
합계	62	36	6	104	중앙→ 광역 65, 광역 내부 등 34, 광역 → 기초 5

주 1: '광역 내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부 권한 재배치 또는 이양 방향이 특정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함
주 2: '요청·협의'는 '기타(요청·협의)' 10개 항과 '기타(원칙·유지)' 1개 항을 합한 것임
주 3: '권한 이양 절차'와 '권한 이양 계획·원칙'은 권한 이양을 위한 절차·계획 또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권한의 실제 귀속 변경을 수반하는 '권한 직접 이양'과 구분하여 집계함
자료: 통합특별법 조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사무이양 유형

-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기능 이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능·권한 확대는 관할 시·군·구로의 기능 이양을 수반해야 함**

분야	이양 권한(관련 법률)	주요 조문
교육	지방공무원 인사 및 사립학교·유아교육 관련 교육부장관 권한 이양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제39·63·64조
도시·건축·산업입지	건축 관련 처분, 도시개발 인가, 산업단지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이양 (「건축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7·99·193조
환경·기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탄소중립 관련 협의·인허가 등 관련 부처 장관 권한 이양	제173·175·176조
수산·해양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자원관리, 해양용도구역 지정, 연안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 권한 이양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연안관리법」)	제281·296·297조
농지·산업	농지 전용허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 및 중소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이양	제277·218조
관광·체육	체육시설, 관광지·관광특구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이양 및 사전 협의 배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법」)	제356·358·364·368조

주: 예시는 권한 직접 이양으로 분류된 항 가운데 대표적인 조문을 추린 것으로 전수를 망라한 것은 아님
자료: 특별법 조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

- 특별법 제10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의 권한은 현행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자치구의 권한 확대 방안은 기본 특례형, 일부 이양형, 전면 이양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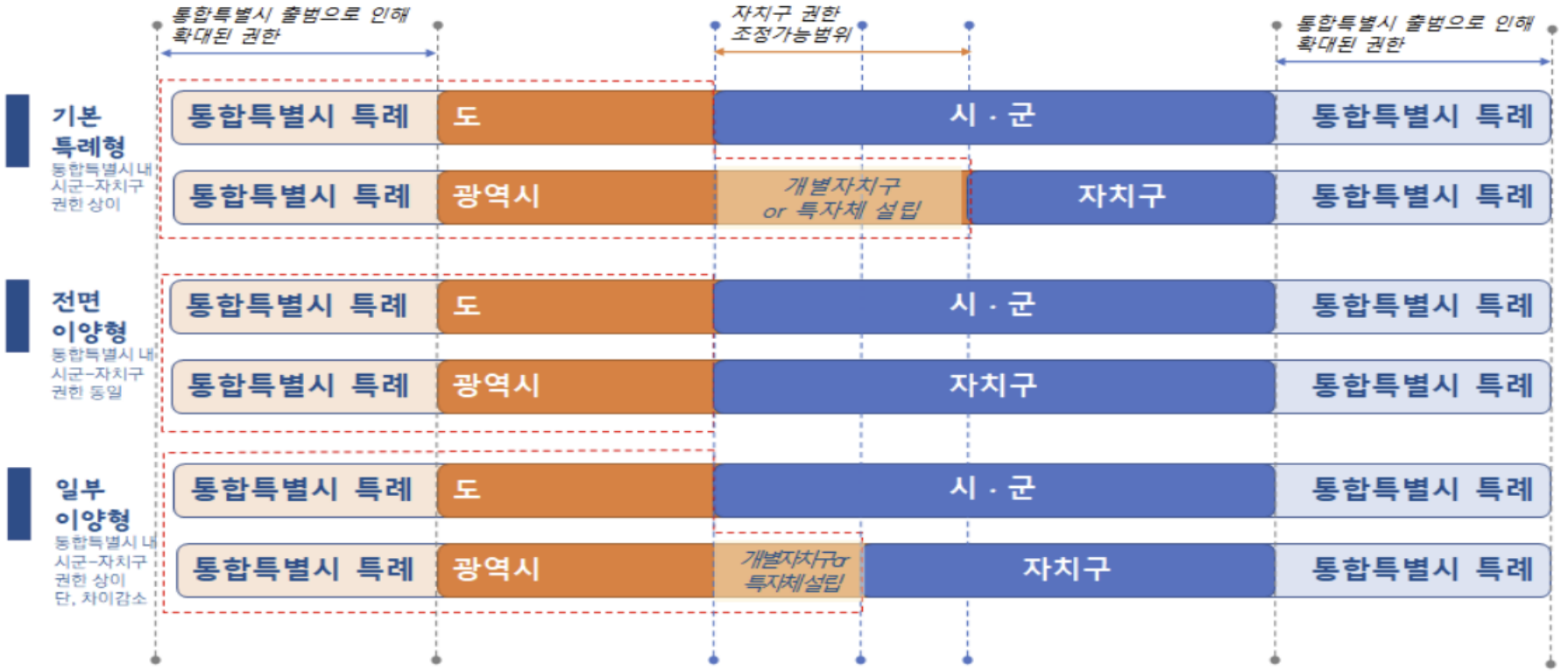

자료: 김지수 외(2026). 5극3특 전략추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모델 개발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기능 확대에 따른 재원 보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 보통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자치구: 자치구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자치구 기능 확대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제시한 기본 특례형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해 재원 확충 및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재정난 극복 및 시·군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의 1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통해 자치구에 교부하고, 현재 23.9%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군과 같은 27%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 **자치구는 1988년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으면서 출범하였으며,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음**
-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관계는 도와 시·군 간의 관계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는 자치구가 수행하지 않고 특별·광역시에서 수행하도록 함**
- **자치구의 제한적인 권한과 책임은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은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종류를 제한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만을 징수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교부됨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필요성

- **자치구가 출범한 지 약 40년이 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자치구는 출범 당시와는 전혀 다른 행정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 이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즉, 과거의 자치구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 측면에서 단순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그러나 2026년 현재 자치구는 시·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대, 행정수요 다양화,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도 빠르게 확대·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교통 및 환경문제, 원도심 노후화에 따른 도시정비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제기되고 있음
  - 자치구의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 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필요성

-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는 국민생활환경의 기준(National Minimum)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주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는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교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조정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조정 기능이 완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규정과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 의하면 특별·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에는 본청과 자치구의 몫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 자치구도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필요성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모두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는 합리적 근거로 생각하기 어려움**
-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조정'이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즉,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광역시가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을 통해 자치구에 재정을 교부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시·군의 경우 2000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한 후 2014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시·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 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을 이유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 **자치구가 시·군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만을 위한 재정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은 국가 재정조정 시스템 전반과 연계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의 재정 규모 변화를 고려해야 함
  -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전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원 감소와 보통교부세 총액 배분 구조의 변화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시(市) 전환

자치구 시(市) 전환

-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이며,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 속하면서도 재정 운용 방식은 서로 다름**
  - 전남의 22개 시·군은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반면 광주의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며 통합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함
- **예를 들어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인구는 약 27만 5,000명으로 비슷하지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차이가 있음**
  - 인구 27만 5,000명의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연간 5,500억 원을 받으며, 시·군 조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000억 원 안팎임
  -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받는 보통교부세는 0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650억 원이 전부임
    - 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 행정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많지 않음

03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 | 자치구 시(市) 전환

자치구 시(市) 전환

- **이 같은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진 '일반 시(市)'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법을 정비해 통합특별시의 기초행정체계를 27개 시·군으로 통일하고, 기존 광주광역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임
- **일반 시(市)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광역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기금 형태로 특별시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역에 필요한 예산과 광역행정(대중교통, 상하수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광역 사무에 필요한 재원은 통합특별시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임
- **그러나 자치구의 일반 시(市) 전환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 전반에서의 개편을 필요로 하는 방안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Part 4

대안별 효과 분석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시나리오 및 분석 방법

- **기존 광주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3.9%이며, 각 시나리오별로 해당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설정함**
  - 시나리오 1: 광주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7%로 인상함(시·군 조정교부금과 동일한 수준)
  - 시나리오 2: 광주광역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별도 산정, 해당 보통교부세 규모만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함 (조정교부금 교부율 약 37.4%로 인상 효과)
  - 시나리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통교부세의 1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교부함(조정교부금 교부율 약 41.0%로 인상 효과)
- **시나리오별 분석 방법은 각 시나리오별로 모수를 구한 다음, 기존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점유율을 기준으로 재분배함**
  - 시나리오 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을 23.9%로 나눠 구한 모수에 27%를 곱하여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을 계산함
  - 시나리오 2: 광주광역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별도 산정, 해당 보통교부세 총액을 현행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 합산함
  - 시나리오 3: 2026년 기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본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 합계의 10%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 합산함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재원 확충 효과

- **자치구 재원 확충 효과는 시나리오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의 순서)
  - 시나리오 2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7.4%, 시나리오 3은 41.0%로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자치구별 증가액은 현행 점유율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북구 → 광산구 → 남구 → 서구 → 동구의 순서)

(단위: 백만 원)

구분	현행 (조정교부금) (A)	조정교부금 27.0% 상향 조정 (시나리오1)		자치구 보통교부세 규모 반영(37.4%) (시나리오2)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10% 배분(41.0%) (시나리오3)	
		규모(B)	차이(B-A)	규모(C)	차이(C-A)	규모(D)	차이(D-A)
광주 동구	60,450	68,291	7,841	98,193	37,743	99,942	39,492
광주 서구	64,200	72,527	8,327	104,284	40,084	106,141	41,941
광주 남구	77,841	87,938	10,097	126,442	48,601	128,694	50,853
광주 북구	106,332	120,124	13,792	172,722	66,390	175,798	69,466
광주 광산구	87,760	99,143	11,383	142,554	54,794	145,093	57,333
합계	396,583	448,023	51,440	644,196	247,613	655,668	259,085

주: 현행 값은 2026년 세입예산(당초, 일반회계) 기준이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의미함
자료: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예산), 행정안전부(2026). 2026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는 시나리오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의 순서)
- **시나리오 1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현행 (A)	시나리오 1(조정교부금 27%)		시나리오 2(자치구 보통교부세 규모 반영)		시나리오 3(전남·광주 보통교부세 10%)	
		지니계수(B)	차이(B-A)	지니계수(C)	차이(C-A)	지니계수(D)	차이(D-A)
광주	0.16767	0.16529	-0.00238	0.15754	-0.01013	0.15723	-0.01044
전남(①)	0.19984	0.19984	0.00000	0.19984	0.00000	0.19984	0.00000
전남광주(②)	0.20326	0.20162	-0.00164	0.19636	-0.00690	0.19612	-0.00714
시·구	0.24333	0.23672	-0.00661	0.21266	-0.03067	0.21132	-0.03201
군·구	0.13499	0.13421	-0.00078	0.13278	-0.00221	0.13282	-0.00217
시·군	0.19984	0.19984	0.00000	0.19984	0.00000	0.19984	0.00000
차이(②-①)	0.00342	0.00178	-0.00164	-0.00348	-0.00690	-0.00372	-0.00714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세입 격차 완화 효과 분해

- **순수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는 시나리오 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순서)
- **시나리오 2의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는 -0.00533으로 시나리오 3의 -0.0052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구분		지니계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합계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순위 변동 효과
현행		0.20326			
시나리오1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23.9%→27.0%)	0.20162	-0.00164 (100.0%)	-0.00160 (97.4%)	-0.00004 (2.6%)
시나리오2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자치구 보통교부세 규모 반영)	0.19636	-0.00690 (100.0%)	-0.00533 (77.3%)	-0.00157 (22.7%)
시나리오3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10% 합산)	0.19612	-0.00714 (100.0%)	-0.00526 (73.7%)	-0.00187 (26.3%)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나리오 및 분석 방법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 및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6가지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함**
  - 시나리오 1: 광주광역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음 / 시나리오 2: 전국의 모든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음
  - 시나리오 A: 별도의 재원 조정 없음(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현행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규모 유지)
  - 시나리오 B: 자치구 보통교부세 증가분의 100%만큼 일반조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함
  - 시나리오 C: 자치구 보통교부세 증가분의 50%만큼 일반조정교부금, 나머지 50% 만큼 시·도비 보조금 규모를 축소함
- **시나리오별 분석 방법(시나리오 A, B, C 기준)a**
  - 광역 본청에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분리함(시나리오 A, B, C 공통)
    - 기준재정수요: 최근3년(2024-2026)간 특별·광역시 본청과 개별 자치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추계함
    - 기준재정수입: 최근3년(2024-2026)간 특별·광역시 본청과 개별 자치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비중으로 추계함
  - 자치구 재원 추가 조정 모형(시나리오 B, C)
    - 광역 본청의 보정수요는 시나리오 A에서 추계된 보통교부세 총량(100%, 50%)의 80% 만큼 감소함
    - 자치구의 보정수입은 시나리오 A에서 추계된 보통교부세 총량(100%, 50%)의 80% 만큼 감소함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원 확충 효과: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1의 경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만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조정률이 변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본청 및 자치구)를 제외한 타 시·도 및 시, 군의 보통교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나리오 A에서 자치구 재원 확충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시나리오 A → 시나리오B → 시나리오 C의 순서)
  - 모든 시나리오에서 북구 → 광산구 → 서구 → 남구 → 동구의 순서로 재원 확충 효과가 크게 나타남

(단위: 억 원)

구분	현행				시나리오 A(재원 조정 없음)				차이 (B-A)	시나리오 B(조정교부금 감소)				차이 (C-A)	시나리오C(조정교부금,시도비보조금감소)				차이 (D-A)
	소계 (A)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B)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C)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D)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광주본청	110	11,770	3,874	7,787	-2,367	9,294	3,874	7,787	-2,476	-1,279	7,906	1,398	7,787	-1,388	-584	8,600	2,636	6,549	-694
광주 자치구	11,661	0	3,874	7,787	14,137	2,476	3,874	7,787	2,476	13,049	3,864	1,398	7,787	1,388	12,355	3,170	2,636	6,549	694
광주 동구	1,418	0	563	855	1,793	375	563	855	375	1,629	585	189	855	210	1,523	480	376	668	105
광주 서구	2,036	0	696	1,340	2,485	450	696	1,340	450	2,288	702	246	1,340	252	2,162	576	471	1,115	126
광주 남구	1,963	0	719	1,244	2,396	434	719	1,244	434	2,206	677	285	1,244	243	2,084	555	502	1,027	122
광주 북구	3,327	0	1,070	2,257	3,939	612	1,070	2,257	612	3,670	955	458	2,257	343	3,498	783	764	1,951	172
광주 광산구	2,917	0	826	2,091	3,523	606	826	2,091	606	3,257	946	220	2,091	340	3,087	776	523	1,788	170

주: 본청 소계는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1-A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1-A → 시나리오 1-B → 시나리오 1-C의 순서)
- **광주광역시 자치구에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시나리오 중 1-C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현행 (A)	시나리오 1-A(재원 조정 없음)		시나리오 1-B(조정교부금 감소)		시나리오 1-C(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감소)	
		지니계수(B)	차이(B-A)	지니계수(C)	차이(C-A)	지니계수(D)	차이(D-A)
광주	0.16960	0.16140	-0.00820	0.16474	-0.00486	0.16708	-0.00252
전남(①)	0.19984	0.19984	0.00000	0.19984	0.00000	0.19984	0.00000
전남광주(②)	0.20379	0.19710	-0.00669	0.19972	-0.00407	0.20170	-0.00209
시·구	0.24476	0.21437	-0.03039	0.22739	-0.01737	0.23597	-0.00879
군·구	0.13555	0.13373	-0.00182	0.13401	-0.00154	0.13471	-0.00084
시·군	0.19984	0.19984	0.00000	0.19984	0.00000	0.19984	0.00000
차이(②-①)	0.00395	-0.00274	-0.00669	-0.00012	-0.00407	0.00186	-0.00209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영향: 시나리오 2

- 자치구 직접 교부로 인한 조정률 하락으로 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감소, 특히 광역시 본청 감소액이 크게 나타남
- 시나리오 B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시나리오 A에서 가장 작음

(단위: 억 원)

구분	현행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도	시	군	자치구	시.도	시	군	자치구	시.도	시	군	자치구	시.도	시	군	자치구
서울	0	0	0	0	0	0	0	13,658	0	0	0	20,879	0	0	0	17,290
부산	19,816	0	1,311	0	14,140	0	1,281	5,225	11,138	0	1,265	7,987	12,630	0	1,273	6,614
대구	15,847	0	4,642	0	11,337	0	4,536	4,147	8,964	0	4,480	6,329	10,138	0	4,508	5,251
인천	10,519	0	3,722	0	6,711	0	3,637	3,568	4,698	0	3,592	5,455	5,698	0	3,615	4,517
광주	11,770	0	0	0	9,082	0	0	2,420	7,661	0	0	3,699	8,367	0	0	3,063
대전	11,360	0	0	0	8,591	0	0	2,509	7,132	0	0	3,831	7,855	0	0	3,177
울산	9,656	0	2,301	0	7,408	0	2,249	2,027	6,228	0	2,221	3,091	6,810	0	2,235	2,567
세종	1,201	0	0	0	1,174	0	0	0	1,159	0	0	0	1,166	0	0	0
경기	0	37,920	5,608	0	0	37,055	5,480	0	0	36,597	5,412	0	0	36,825	5,446	0
강원	11,239	24,421	29,692	0	10,982	23,864	29,015	0	10,847	23,569	28,656	0	10,914	23,716	28,834	0
충북	8,043	14,579	16,203	0	7,860	14,247	15,833	0	7,763	14,071	15,637	0	7,811	14,158	15,734	0
충남	9,467	26,462	17,869	0	9,251	25,858	17,461	0	9,137	25,539	17,246	0	9,193	25,698	17,353	0
전북	10,378	26,973	19,448	0	10,141	26,358	19,005	0	10,016	26,032	18,770	0	10,078	26,194	18,887	0
전남	14,138	18,898	45,550	0	13,816	18,467	44,510	0	13,645	18,239	43,961	0	13,730	18,352	44,234	0
경북	18,404	52,344	28,028	0	17,984	51,149	27,388	0	17,762	50,517	27,050	0	17,873	50,831	27,218	0
경남	11,112	34,708	24,843	0	10,858	33,916	24,276	0	10,724	33,497	23,976	0	10,791	33,705	24,125	0
합계	162,950	236,305	199,217	0	139,335	230,914	194,671	33,554	126,874	228,061	192,266	51,271	133,054	229,479	193,462	42,479
증감					-23,615	-5,393	-4,546	33,554	-36,077	-8,244	-6,950	51,271	-29,897	-6,827	-5,756	42,479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원 확충 효과: 시나리오 2

- **자치구 직접교부에 따른 조정률 하락으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광주 본청 재원 감소 규모가 자치구 재원 증가 규모보다 큼**
- **시나리오 A에서 자치구 재원 확충 효과가 가장 크고, 시나리오 C에서 가장 작음**
  - 시나리오 A보다 B와 C에서 더 작은 이유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만큼 조정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 시나리오 B보다 C에서 더 작은 이유는 보통교부세 계산에 반영되는 조정교부금은 80%만 반영되기 때문임

(단위: 억 원)

구분	현행				시나리오 A(재원 조정 없음)				차이 (B-A)	시나리오 B(조정교부금 감소)				차이 (C-A)	시나리오C(조정교부금,시·도비보조금감소)				차이 (D-A)
	소계 (A)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B)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C)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소계 (D)	보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광주본청	110	11,770	3,874	7,787	-2,579	9,082	3,874	7,787	-2,688	-1,580	7,661	1,454	7,787	-1,690	-874	8,367	2,664	6,577	-984
광주 자치구	11,661	0	3,874	7,787	14,080	2,420	3,874	7,787	2,420	12,940	3,699	1,454	7,787	1,279	12,304	3,063	2,664	6,577	644
광주 동구	1,418	0	563	855	1,785	366	563	855	366	1,612	560	197	855	194	1,516	464	380	672	97
광주 서구	2,036	0	696	1,340	2,475	440	696	1,340	440	2,268	672	256	1,340	232	2,152	557	476	1,120	117
광주 남구	1,963	0	719	1,244	2,386	424	719	1,244	424	2,187	648	295	1,244	224	2,075	537	507	1,032	113
광주 북구	3,327	0	1,070	2,257	3,925	598	1,070	2,257	598	3,643	914	472	2,257	316	3,486	757	771	1,958	159
광주 광산구	2,917	0	826	2,091	3,509	592	826	2,091	592	3,230	905	234	2,091	313	3,075	750	530	1,795	157

주: 본청 소계는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2-A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2-A → 시나리오 2-B → 시나리오 2-C 순서)
- **전국의 모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시나리오 중 2-C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현행 (A)	시나리오 2-A(재원 조정 없음)		시나리오 2-B(조정교부금 감소)		시나리오2-C(조정교부금,시·도비보조금감소)	
		지니계수(B)	차이(B-A)	지니계수(C)	차이(C-A)	지니계수(D)	차이(D-A)
광주	0.16960	0.16156	-0.00804	0.16509	-0.00451	0.16726	-0.00234
전남(①)	0.19984	0.20059	0.00075	0.20099	0.00115	0.20079	0.00095
전남광주(②)	0.20379	0.19744	-0.00635	0.20004	-0.00375	0.20183	-0.00196
시·구	0.24476	0.21233	-0.03243	0.22463	-0.02013	0.23325	-0.01151
군·구	0.13555	0.13404	-0.00151	0.13396	-0.00159	0.13453	-0.00102
시·군	0.19984	0.20059	0.00075	0.20099	0.00115	0.20079	0.00095
차이(②-①)	0.00395	-0.00315	-0.00710	-0.00095	-0.00490	0.00104	-0.00291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세입 격차 완화 효과 분해

- **순수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는 시나리오 1-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시나리오 1 → 2, 시나리오 A → B → C의 순서)
- **시나리오 1-A의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는 -0.00517로 시나리오 2-A의 -0.0038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구분		지니계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합계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순위 변동 효과
현행		0.20379			
시나리오 1-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재원 조정 없음)	0.19710	-0.00669 (100.0%)	-0.00517 (77.3%)	-0.00152 (22.7%)
시나리오 1-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	0.19972	-0.00407 (100.0%)	-0.00381 (93.7%)	-0.00026 (6.3%)
시나리오 1-C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감소)	0.20170	-0.00209 (100.0%)	-0.00208 (99.4%)	-0.00001 (0.6%)
시나리오 2-A	전국 자치구 (재원 조정 없음)	0.19744	-0.00635 (100.0%)	-0.00386 (60.7%)	-0.00249 (39.3%)
시나리오 2-B	전국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	0.20004	-0.00375 (100.0%)	-0.00302 (80.7%)	-0.00073 (19.3%)
시나리오 2-C	전국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감소)	0.20183	-0.00196 (100.0%)	-0.00184 (94.1%)	-0.00012 (5.9%)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시(市) 전환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개편 분석 방법

- **지방세징수액**(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 (현행) 광역시와 자치구의 지방세는 특별광역시세(9)-자치구세(2)로 배분됨
  - (개편) 도-시·군의 지방세 체계와 동일한 세목으로 특별광역시세(6) – 자치구세(5)로 재분류함
    - (자동차세) 광역이 징수한 자동차세는 자치구가 징수한 자동차세 비중으로 재분배함
    - (담배소비세) 광역이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자치구의 18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재분배함
- **일반조정교부금**(2024년 회계연도 결산 총계 기준)
  - (현행) 기존 특별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3%를 곱하여 일반조정교부금(90%)을 추정한 후, 현행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비중으로 재분배함(특별광역시 세목 9개 기준)
  - (개편) 위에서 재분류한 특별광역시세(보통세)에 시·군 조정교부금과 동일한 27%를 곱하여 일반조정교부금(90%)을 계산한 후, 현행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비중으로 재분배함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시(市) 전환

보통교부세 개편 분석 방법

- **보통교부세**(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 (현행)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지 않음
  - (개편) 광주광역시 자치구만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음
    - 기준재정수요액(균형예산제약 하에 증가한 세입만큼 세출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기본) 광주 본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본청+자치구)의 3년 평균 세출예산 비중으로 재분배함
      - (광주 본청) 위에서 구한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차액의 80%를 추가함
      - (광주 자치구) 위에서구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별 (지방세+조정교부금) 차액의 100%를 추가함
    - 기준재정수입액(앞에서 추정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변화 규모 반영)
      - (기본) 광주 본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본청+자치구)의 3년 평균 세입예산 비중으로 재분배함
      - (광주 본청) 위에서 구한 본청의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 지방세 차액의 80%를 추가함
      - (광주 자치구) 위에서구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별 (지방세+조정교부금) 차액의 80%를 추가함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시(市) 전환

재원 확충 효과

- 지방세 세목 개편 시 광주 본청의 지방세는 5,824억 원 감소하며, 광주 서구의 지방세가 1,7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증가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74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할 경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규모는 3,154억 원이며, 자치구 재원 순증 규모는 8,231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단위: 억 원)

구분	지방세(징수액 기준)			일반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차이 합계 (C+F+I)
	현행(A)	개편(B)	차이 (C=B-A)	현행(D)	개편(E)	차이 (F=E-D)	현행(G)	개편(H)	차이 (I=H-G)	
광주 본청	20,580	14,756	-5,824	-3,839	-3,092	748	11,770	12,011	241	-4,836
광주 동구	437	1,004	567	536	432	-104	0	435	435	897
광주 서구	955	2,725	1,769	680	548	-132	0	673	673	2,310
광주 남구	558	1,153	595	700	564	-136	0	492	492	951
광주 북구	998	2,389	1,391	1,080	870	-210	0	769	769	1,949
광주 광산구	1,289	2,790	1,502	842	678	-164	0	786	786	2,123
자치구 합계	4,237	10,061	5,824	3,839	3,092	-748	0	3,154	3,154	8,231

주: 이 수치는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재원 변화 규모와 다를 수 있음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시(市) 전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 자치구의 시(市) 전환에 따른 재정 시스템 개편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개편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니계수는 0.20878로 개편 이전보다 0.008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군과 자치구 간의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제도 개편 이후 0.013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현행(A)	자치구 시(市) 전환	
		지니계수(B)	차이(B-A)
광주	0.16062	0.16281	0.00219
전남(①)	0.21438	0.21461	0.00023
전남광주(②)	0.21738	0.20878	-0.00860
시·구	0.25834	0.17960	-0.07874
군·구	0.14476	0.15790	0.01314
시·군	0.21438	0.21461	0.00023
차이(②-①)	0.00300	-0.00583	-0.00883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자치구 시(市) 전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분해

- 자치구를 시(市)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순수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순수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가 아닌 순위 변동 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치구의 시(市) 전환은 지방재정 시스템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지니계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합계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	순위 변동 효과
현행	0.21738			
자치구 시(市) 전환	0.20878	-0.00860 (100.0%)	0.00750 (-87.2%)	-0.01610 (187.2%)

주: 조정재원 4(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통교부세+시·도비 보조금) 기준 지니계수 값임

04 대안별 효과 분석 | 종합

분석 결과 종합

구분		재원 확충(억 원)	재정 격차 완화	순수 세입 격차 완화	순위 변동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시나리오 1 (조정교부금 27%)	514	-0.00164	-0.00160	-0.00004
	시나리오 2 (자치구 보통교부세 규모 반영)	2,476	-0.00690	-0.00533	-0.00157
	시나리오 3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10%)	2,591	-0.00714	-0.00526	-0.00187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나리오 1-A (광주, 재원 조정 없음)	2,476	-0.00669	-0.00517	-0.00152
	시나리오 1-B (광주, 조정교부금 감소)	1,388	-0.00407	-0.00381	-0.00026
	시나리오 1-C (광주,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감소)	694	-0.00209	-0.00208	-0.00001
	시나리오 2-A (전체, 재원 조정 없음)	2,420	-0.00635	-0.00386	-0.00249
	시나리오 2-B (전체, 조정교부금 감소)	1,279	-0.00375	-0.00302	-0.00073
	시나리오 2-C (전체,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감소)	644	-0.00196	-0.00184	-0.00012
자치구 시(市) 전환		8,231	-0.00860	0.00750	-0.01610

Part 5

특별법 개정(안)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방안

특별법 조항 신설 및 조례 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신설) 제11조의2(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통합특별시에 합산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현행)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 (개정안)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 및 기존 광주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액 중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방안

제도 개편 방안

- (개편 방향)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분리 산정 후 통합특별시에 합산 교부,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만큼 조정교부금 증가함
- (평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내에서 추진 가능, 단기 개편 방안으로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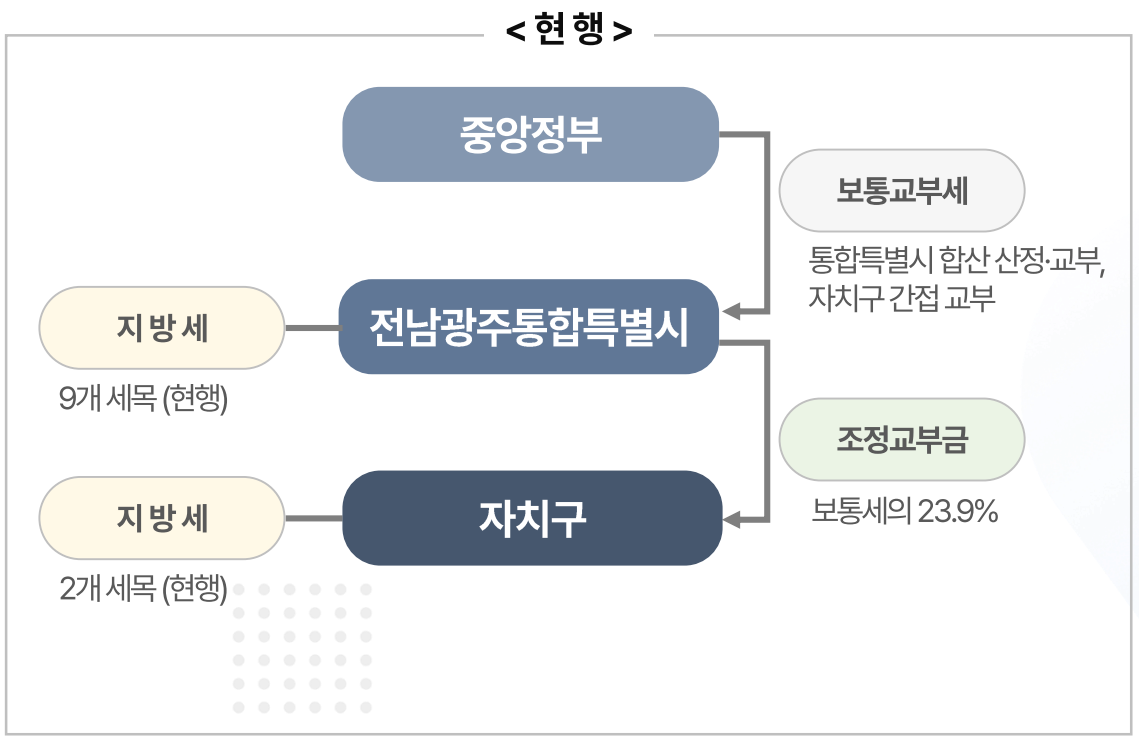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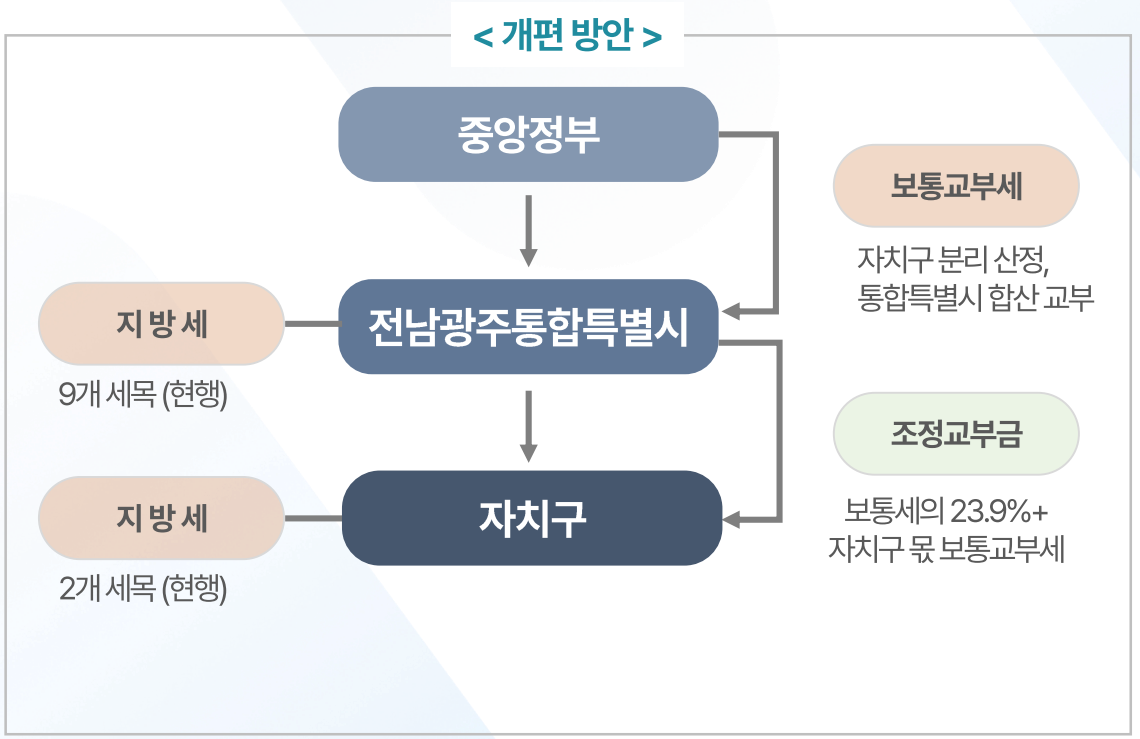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별법 조항 신설 및 법률 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신설) 제11조의2(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자치구에 직접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 (개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개편 방안

- (개편 방향)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분리 산정 후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 (평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편 필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검토 필요, 기능 확대와 연계한 중기 개편 방안으로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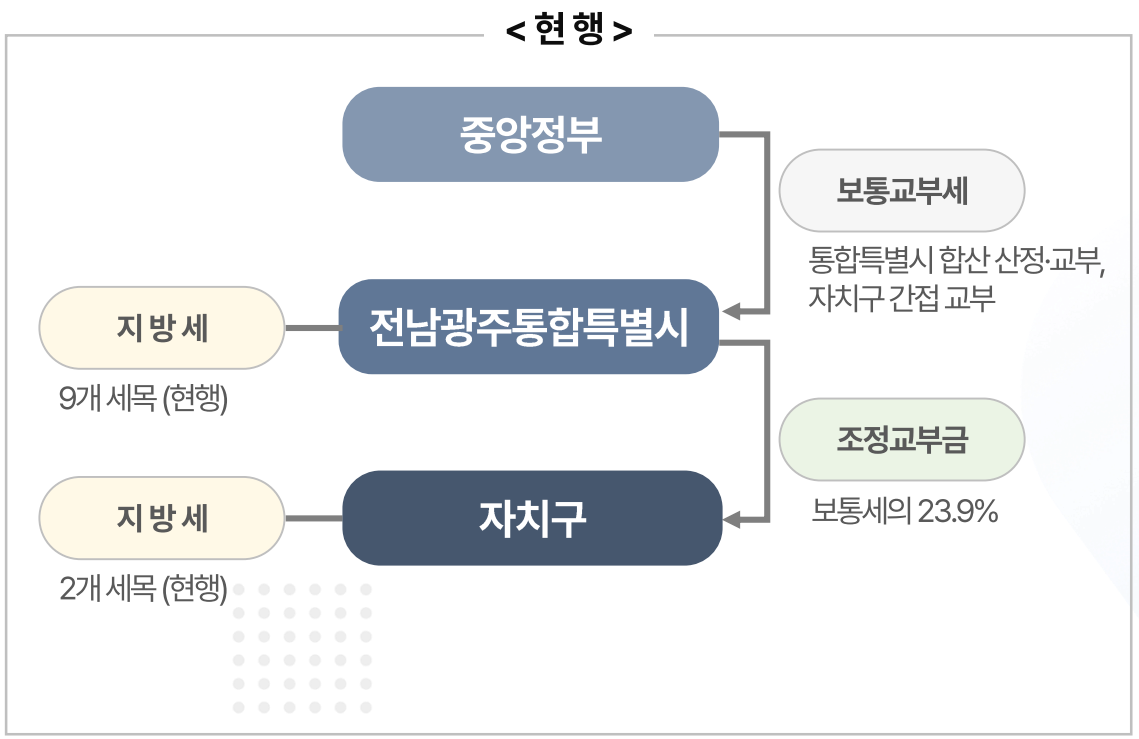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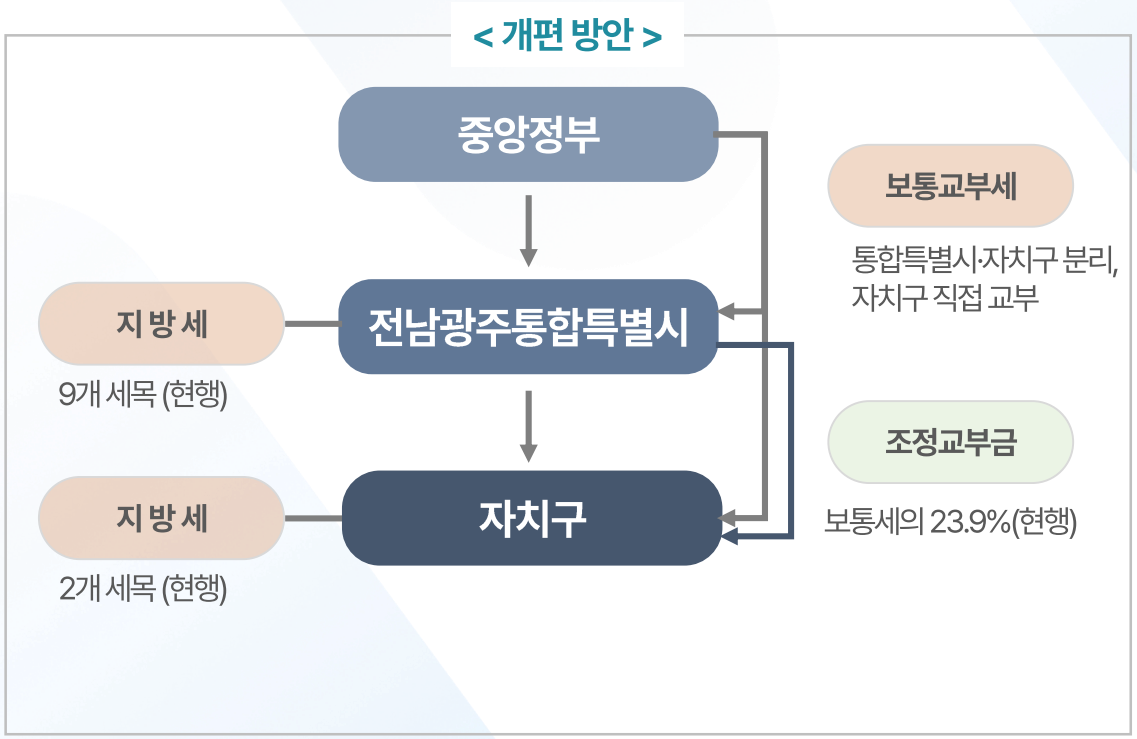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시 전환

특별법 조항 신설

- (신설) 제10조의2(자치구의 시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건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 3. 자치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구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관할구역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자치구의 시 전환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 행정수요, 재정 여건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자치구의 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된 시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 자치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05 특별법 개정(안) | 자치구 시 전환

제도 개편 방안

- (개편 방향) 자치구를 시로 전환, 시·군·자치구 간 지방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체계 일원화
- (평가) 정부 간 재정관계 전면 개편 필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검토 필요, 장기 개편 방안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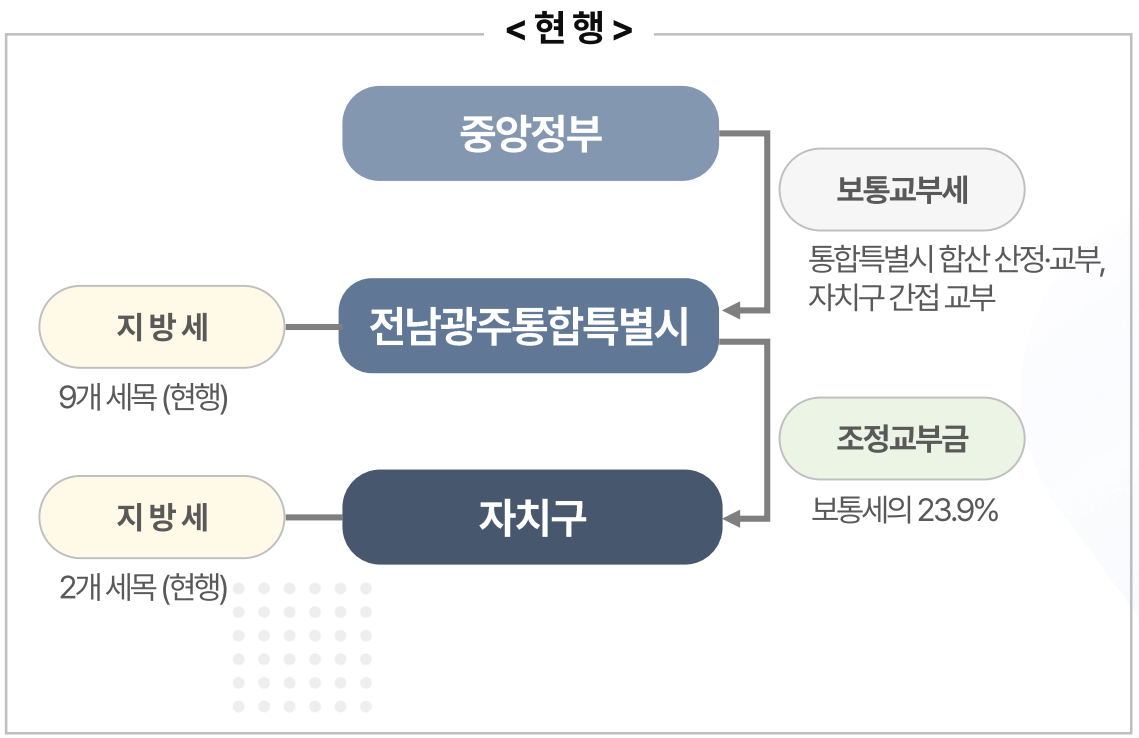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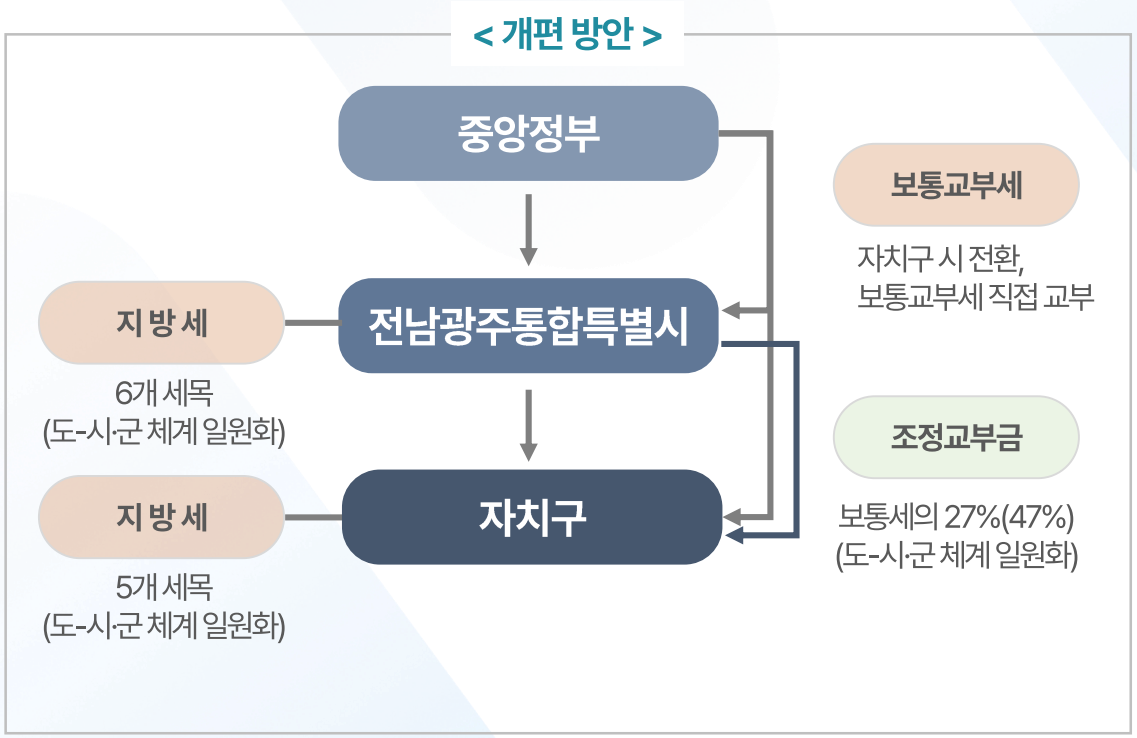

05 특별법 개정(안) | 종합

특별법 개정(안) 종합

방안 1 — 단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중앙정부

▼ 보통교부세
(분리 산정, 합산 교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보통세 23.9% +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
[간접 교부]

방안 2 — 중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중앙정부

▼ 보통교부세
(분리 산정, 직접 교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 교부

자치구

자치구 재원 = 조정교부금 23.9%
+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직접 교부]

방안 3 — 장기

자치구 시(市) 전환

중앙정부

▼ 보통교부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 교부

자치구 → 시(市)

지방세 6개 세목·보통세 27%(47%)
+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체계 일원화]

감사합니다